

주간농업·농촌동향 2010년 상반기 식품검역 수·출입 실적

※ 7월 14일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발표한 “2010년 상반기 식품검역 수·출입 실적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2010.07.19 미래정책연구소

□ 수·출입 검역실적 개요

○ 2010년도 상반기 농산물 수출입 검역건수는 총 11만 4,738건으로 지난해 9만 7,479건보다 **18% 증가**

- 수출 검역건수는 2만 8,2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6,156건 보다 8% 증가하였음.
- 수입 검역건수는 지난해 7만 1,323건보다 21% 증가한 8만 6,446건으로 나타남.

<수·출입 검역실적>

단위: 건

구분	'10(A)		'09(B)		전년 동기대비 (A/B,%)	
	건수	수량	건수	수량	건수	수량
전체	114,738	-	97,479	-	118	-
수출	28,292	90천톤	26,156	152천톤	108	59
		5천m ³		7천m ³		71
		34,480천개		28,246개		122
수입	86,446	13,024천톤	71,323	10,392천톤	121	125
		3,087천m ³		2,574천m ³		120
		101,851천개		91,459천개		111

주: 비식물류(생물학적방제용 유용동물, 모래, 자갈 등) 제외

□ 유형별 검역실적

○ 유형별 수출식품 검역실적은 곡물류와 종자류가 전년대비 각각 **19%, 2%** 증가한 반면, **묘목류, 과일류, 채소류, 화훼류**는 각각 **3~5%** 감소하였음.

- 품목별 수출 검역실적은 **심비디움묘**가 전년대비 104% 증가하였고, **종려묘목**과 **새송이버섯**은 전년대비 각각 93%, 75% 늘었음. 반면, **배** 수출 검역실적은 작년보다 10% 감소하였음..
- 호주·뉴질랜드로 쌀, 미국·캐나다로 새송이버섯, 태국·베트남으로 단감, 일본으로 장미절화, 네덜란드로 종려묘목 등이 주로 수출됨.

<유형별 수출식품 검역실적>

구분	단위	'10(A)		'09(B)		전년 동기대비 (A/B,%)	
		건수	수량	건수	수량	건수	수량
종자류	톤	1,123	196	1,101	219	102	89
묘목류	천개	1,166	9,303	1,201	7,636	97	122
곡물류	톤	1,251	37,461	1,049	25,226	119	149
과실류	톤	1,559	9,230	1,626	9,017	96	102
채소류	톤	11,728	28,897	12,346	31,757	95	91
화훼류	천개	1,647	23,124	1,740	19,653	95	118

<주요 품목의 수출 검역실적>

구분	단위	'10(A)		'09(B)		전년 동기대비 (A/B,%)	
		건수	수량	건수	수량	건수	수량
새송이버섯	톤	603	1,149	345	434	175	265
단감	톤	84	332	73	160	115	208
종려묘목	천개	29	41	15	23	193	179
쌀	톤	147	1,918	114	1,226	129	156
장미절화	천개	307	9,588	260	7,300	118	131
심비디움묘	천개	232	832	114	668	204	125
파프리카	톤	2,307	8,732	1,811	8,597	127	102
배	톤	570	6,475	630	6,771	90	96

○ 유형별 수입식품 검역실적은 **과실류가 35%로 가장 크게 증가**했고, 다음으로는 **화훼류 32%, 사료류 28%, 수목류 24%** 순으로 나타남. 반면, 묘목류의 수입 검역실적은 전년대비 4% 감소하였음.

- 품목별 수입 검역실적은 옥수수가 전년대비 70% 증가하였고, 감자와 오렌지도 전년대비 각각 68%, 5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반면, 양파와

건고추 수입 검역실적은 작년대비 각각 40%, 17% 감소하였음.

<유형별 수입식물 검역실적>

구분	단위	'10(A)		'09(B)		전년 동기대비(A/B,%)	
		건수	수량	건수	수량	건수	수량
종자류	톤	3,856	7,986	3,231	10,807	119	74
묘목류	천개	4,516	47,145	4,727	41,606	96	113
곡물류	톤	3,552	3,403,360	3,118	2,775,072	114	123
과실류	톤	19,275	392,859	14,252	306,928	135	128
채소류	톤	13,281	220,152	11,735	217,217	113	101
화훼류	천개	1,751	24,285	1,330	17,852	132	136
수목류	천㎡	11,645	3,089	9,386	2,573	124	120
특작류	톤	7,924	167,442	6,994	158,180	113	106
사료류	톤	11,500	8,105,960	8,987	6,575,040	128	123

<주요 품목의 수입 검역실적>

구분	단위	'10(A)		'09(B)		전년 동기대비(A/B,%)	
		건수	수량	건수	수량	건수	수량
국화절화	천개	157	12,386	109	5,784	144	214
옥수수	톤	423	1,122,491	249	671,363	170	167
오렌지	톤	5,816	100,652	3,781	65,022	154	155
알팔파건초	톤	726	78,173	484	51,462	150	152
감자	톤	128	15,011	76	11,592	168	129
바나나	톤	3,905	170,686	2,989	134,172	131	127
밀	톤	412	1,157,900	350	992,173	118	117
콩	톤	374	649,550	358	572,210	104	114
건고추	톤	109	4,381	132	5,966	83	73
양파	톤	228	9,280	377	20,967	60	44

- 한편, 수입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등이 발견되어 폐기, 반송되거나 소독 처분된 건수는 총 1만 5,304건으로 전체 검역건수 8만 6,446건의 18%를 차지하며, 지난해 같은 기간 처분건수(1만 2,459건)보다 2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발견된 규제병해충은 총 299종으로 2009년(284종)보다 5% 증가하였으며, 중국산 국화절화 등에서 굴파리과 해충 등 총 25종의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 발견됨.

주간농업·농촌동향 **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기반 정비**

※ 7월 13일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“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산집법)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□ 산집법 개정 목적

1.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
-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의 일부(30% 이내)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 -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: 산업시설구역, 지원시설구역, 공공시설구역, 녹지구역
- 국가·지자체가 공공시설구역 용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민간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성장초기단계로써 부지임대 수요가 큰 신·재생에너지 업체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.
 - 전국 산업입지 수요조사('09년 말, 제조업체 1만여개 대상) 결과, 부지 희망유형이 매입(90%), 임대(10%)로 나타난 반면, 신·재생에너지업체 34개 대상의 설문조사('10년 3월)에서는 44.1%(15업체)가 부지임대를 희망

2.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

-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를 위해 공장, 지식산업센터, 근린생활시설, 문화·체육시설 등을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으로 규정
-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

- 산집법 개정에 따라 민간(토지소유자)도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개발로 참여 가능하게 된 바, 대행 절차 등 사업 대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함.

□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

1.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

-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그에 따른 자가 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상의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 - 관리권자: 국가산업단지(지식경제부장관), 일반산업단지·도시첨단산업단지(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), 농공단지(시장·군수·구청장)
- 현행 산업용지 등의 임대계약기간 제한(5년 이상, 임차인 요청시 3년 이상)을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1년 이상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탄력성을 높이고,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.

2.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

- 수도권에서 공장이전을 하려는 자가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공장등록 대장등본 또는 기존공장폐쇄확인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의무를 삭제하여 공장설립완료 신고서 구비서류를 간소화
- 공장등록 후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 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설립 업종 변경 승인절차 간소화
- 현행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관련 법규의 인·허가 등을 받았는지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계약체결여부 결정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리화

*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.

<별첨 1> 산집법 시행령 개정내용

구분	관련 조항	개정내용	
		종전	개정
공공시설 범위	영 제4조의5	<신 설>	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직시설, 주차장, 운동장, 보육시설
산업단지 내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	영 제43조 제4항	<신 설>	산업단지 공공시설구역의 용지 일부(30%이내)에 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
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자가상승의 기부	영 제43조의2	<신 설>	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자가상승의 기부범위를 50% 이상으로 규정
중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 간소화	영 제43조의3	<신 설>	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관련 인·허가 등을 의제 처리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3으로 규정
산업용지 등의 임대계약기간 제한에 탄력성 제고	영 제48조의4 제2항	산업용지 등의 임대계약기간이 5년 이상(임차인 요청시 3년 이상)으로 제한	임차인 요청시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이 가능토록 하고,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
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	영 제58조의2	<신 설> *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추가 사항 규정	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가능한 건축사업 규정 구조고도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추가사항 규정 재생계획 수립절차 후 2년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사업예정지구에서 제외
	영 제58조의3	<신 설>	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법인에 출자가능한 민간기업 요건과 국가·지자체·관리기관의 출자비율(20%이상) 규정
	영 제58조의4	<신 설>	구조고도화사업 대행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
	영 제58조의5	<신 설>	개발이익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개발이익의 50%이상으로 규정
	영 제58조의6	<신 설>	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절차, 제출서류, 공고내용 등 규정

<별첨 2>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내용

구분	관련 조항	개정내용	
		중건	개정
공장설립완료신고서 구비서류를 간소화	규칙 제9조 제3항	수도권에서 공장이전을 하려는 자가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공장등록 대장등본 또는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	<삭 제>
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	규칙 제11조 제1항	공장설립 변경승인 절차 없이 공장등록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규정	공장등록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 변경 없이 업종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
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한 합리화	규칙 제34조 제2항	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	관련 법규의 인·허가 등을 받았는지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계약체결 여부 결정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